

의안번호	제 36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347 회)

**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간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
-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폐지로 경비지원 근거 조례 변경

## 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도비보조율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일원화(안 제8조)
  - 현행 : 도비 40%, 시군비 60%
  - 변경 : 도비 30%, 시군비 70%(청주시는 80%)
- 출산장려금 경비지원 제반사항의 근거조례 변경(안 제13조)
  -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폐지(“15.1.1)에 따라  
“ 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 ”를 “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”로 변경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도가 100분의 40을 시·군이 100분의 60을 부담한다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원금의 분담) 지원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<u>도가 100분의 40을 시·군이 100분의 60을 부담한다.</u>	제8조(지원금의 분담) ----- ----- 「 <u>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</u> 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 ( <u>생 략</u> )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, 예산요구 및 교부,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「 <u>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</u> 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 「 <u>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</u> 」-----.

관련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제15조(시·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

제3조(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비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.

<별표>

연번	사 업 명	기준보조율		비고
		청주시	기타시군	
67	출산장려 사업	20	30	